

재단법인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령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영은 총무원법 제16조에 의해 불교문화유산의 발굴조사 및 보존·관리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'재단법인 불교문화유산연구소'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명칭은 "재단법인 불교문화유산연구소"(이하 "연구소")라 한다.

제3조(소재) 연구소의 소재지는 서울에 두며,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국가유산 보존, 보호 활동
2. 국가유산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
3. 국가유산 연구 및 조사
4. 국가유산 자료집 발간
5. 국가유산 연구인력 양성 교육 및 사회교육
6. 중단 목적사업 지원
7. 기타 국가유산의 보존, 연구에 필요한 사항

제2장 법인의 구성

제5조(법인의 종류) 연구소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.

제6조(임원) ①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 사 장 1인
2. 대표이사 (연구소장 겸임) 1인
3. 이사 7인 이상 11인 이내(이사장, 대표이사를 포함한다.)
4. 감사 2인

② 법인의 이사 중 재적 1/2 이상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로 한다.

제7조(임원의 선임) ①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.

1. 이사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2. **대표이사는 국가유산전문가**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.
3.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, 기획실장, 문화부장, 불교중앙박물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.
4. 이외의 이사는 **국가유산전문가**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② 법인의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.

1.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은 당연직 감사로 한다.
2. 이외의 감사는 회계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제8조(임원의 임기) 당연직 임원은 그 임기 중으로 하고, 선출된 임원인 이사는 4년으로 하고, 감사는 2년으로 한다.

제9조(직무대행)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**대표이사**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이사회)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서 구성되며,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11조(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연구소의 기구

제12조(구성) ① 연구소에 소장, 부소장, 학예연구실을 둔다. <개정 불기 2563(2019).01.17>

② 연구소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팀을 신설할 수 있다. <개정 불기 2562(2018).01.25, 불기 2563(2019).01.17>

③ 팀 신설 등 연구소의 조직 구성 변경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불기 2562(2018).01.25, 불기 2563(2019).01.17>

제13조(자문기구) ① 이사장은 연구소의 전문적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
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4조(후원회) ①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참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을 연구소의 후원회로 둘 수 있다.

② 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5조(실무협의회) ① 연구소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와 이사회의 의사결정 보좌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둔다. <개정 불기 2562(2018).01.25>

② 연구소의 조직, 인사, 예·결산,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사항은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불기 2562(2018).01.25>

③ 실무협의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불기 2562(2018).01.25>

1. 연구소 : 부소장, 실(팀)장 <신설 불기 2562(2018).01.25>

2. 총무원 : 총무차장, 기획차장, 문화차장, 문화재팀장 삭제 <불기2558(2014)2014.1.9> <신설 불기 2562(2018).01.25, 개정 불기 2563(2019).01.17>

제16조(임원 및 자격)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1. 소 장 1인

2. 부 소 장 1인

3. 삭제 <불기2555(2011).12.29>

② 소장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겸직한다.

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, 중앙종무기관 국장급, 중앙종무기관 또는 불교문화유산연구소의 1급 이상 일반직 총무원, 국가유산관련학 전공자로서 대학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불기 2562(2018).01.25>

④ 삭제 <불기2555(2011).12.29>

제17조(직원) ① 연구소의 직원으로 연구원, 사무원 등을 둔다.

② 연구원은 국가유산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, 관련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 사무원 등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18조(임직원의 직무)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한다.

③ 학예연구실장과 각 팀장은 연구소의 조사, 연구에 관한 관할 업무를 담당하고, 행정사무팀장

은 행정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불기 2562(2018).01.25, 불기 2563(2019).01.17>

④ 연구원은 연구소의 **국가유산조사**, 연구업무를 수행한다.

⑤ 사무원은 연구소의 사무, 행정업무를 수행한다.

제19조(임직원의 보수) 임직원의 보수는 운영내규로 정한다.

제4장 재산과 회계

제20조(경비)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21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22조(예결산) ① 연구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실무협의회
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.

②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
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3조(잉여금) 매 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, 이사회 의결을
거쳐 연구소의 자산취득 및 목적사업 사용과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등에 지원한다.

제24조(계속비)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
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25조(회계감사) 연구소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6조(보고 및 업무소관) ① 소장은 연구소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
총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소에 관한 업무 소관은 총무원 문화부로 한다.

제5장 보 칙

제27조(잔여재산 귀속) 연구소를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귀속
한다.

제28조(세부사항) 이 영과 정관에서 규정한 것 이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
회 협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.

부칙 <불기 2551(2007).07.10>

제1조(효력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.

제2조(기존법령의 폐기) 이 영의 공포와 함께 “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”은 폐기한다.

제3조(불교문화유산연구소 정관과의 관계) 이 영과 연구소의 정관이 상충할 때는 이 영이 우선한다.

제4조(경과조치) 2007년 7월 10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‘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’는 이 영에 의하여 설립한 것으로 한다.

부칙 <불기 2552(2008).09.0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불기 2555(2011).12.29>

제1조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.

부칙 <불기 2558(2014).01.09>

제1조(효력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.

부칙 <불기 2562(2018).01.2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불기 2563(2019).01.1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불기 2568(2024).09.2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